

한·EU FTA 협상 동향

Free Trade Agreement



1 협상 현황

- 협상 출범(2007.5.6) 이후 5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며, 양측 입장 차이가 큰 상품 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
 - 자동차 기술표준, 공산품 원산지 기준도 입장 차이가 큰 쟁점
- 농산물은 민감성 반영을 위해 관세철폐기간 장기화, 농산물 셰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조치 적용에 협상력을 집중

2 5차 협상 주요결과

【농업(상품양허)】

- 우리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 적용을 조건부로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기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
- EU측은 돼지고기, 낙농품, 포도주 등 관심품목의 양허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예외적 조치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 표명
 - 다만, 상업적 이익이 큰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 요구
- 우리는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 허용은 불가하며, EU측이 진정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
 - 또한 양측이 이미 농산물 민감성 고려 원칙에 합의했음을 강조

【위생·검역(SPS)】

- 양측은 협정문의 총 12개 조문 중 문안 표현상의 입장 차이만 있던 9개 조문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

- 남은 쟁점은 지역화 인정절차와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

- 우리는 수입국의 위험평가 실시는 주권적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고, EU측이 이를 반영해 문안을 수정하기로 함.

【지리적 표시(GI)】

- EU는 우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제도를 인정하고, 양측이 향후 보호 대상 품목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를 희망

- 현재 지리적표시 품목수가 우리는 51개, EU는 2,700여개로 차이가 많아 보호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

※ 또, EU는 우리 상표법상의 유사제도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 제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의견교환 중

【원산지 기준】

- 원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만 특혜관세를 적용 (완전생산기준)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수렴
- 또한 동 원산지 기준은 특혜관세 적용 판단기준이며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와는 별개라는 점도 확인

3 향후 계획

- 제6차 협상은 2008년 1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
- 농산물 양허안 등과 관련한 EU의 구체적 요구가 있을 경우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응